

# 『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』 사업시행협약서

함양군과 경남개발공사는 『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』을 추진함에 있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이 협약의 목적은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, 신천리 일원의 『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』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함양군과 경남개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고 한다)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업무의 범위)

- ① “함양군”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1.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업무 지원
  2. 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 업무
  3. 함양 문화·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 업무
  4. 기타 이에 따르는 관련 업무
- ② “공사”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1.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 업무
  2. 도시개발사업 보상·공사·분양 등 관련 업무
  3. 함양 문화·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 업무 지원
  4. 기타 이에 따르는 관련 업무

**제3조 (사업계획의 수립)** “함양군”과 “공사”는 각각 함양 문화·복지 도시기반시설과 본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고, 합의된 의견은 성실히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인·허가 이행)** ①본 사업 위한 각종 용역 및 인·허가 추진 업무는 “공사”의 책임으로 추진하고, 인·허가 과정에서의 관련기관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 
② “공사”는 관련기관 의견 중 부득이하게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“함양군”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5조 (지구 외 기반시설)** ①본 사업지구와 연접한 국도24호선 확장 및 남측 용산들 연결도로는 “함양군”의 책임으로 본 사업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.  
② “함양군”은 본 사업지구 경계까지의 상·하수도 관로(부담금 포함)를 부담하고, 함양군 상·하수도 기본계획에 본 사업지구의 용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6조 (문화·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) ①본 사업과 연계된 문화·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“함양군” 과 “공사”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“함양군” 은 문화·복지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“공사” 에 위탁 또는 대행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고, “공사” 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 (인수·인계) ① “공사” 는 공공시설물 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시설물 인계를 요청하여야 하며, “함양군” 은 관련 규정 및 하자 등을 점검하여 즉시 인수받아야 한다.

②공사 준공 전 “함양군” 에서 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인수 이전이라도 공용개시가 있는 경우 “함양군” 에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 (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)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, 양 기관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 한다.

1.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불가할 경우
2. 협약당사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

제9조 (비밀유지)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기밀사항과 관련 자료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 (부칙)

- ①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유효하다.
- ②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본 협약 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④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함양군” 과 “공사”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⑤협약 당사자의 명의를 변경될 경우 변경된 명의인은 이 협약서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의무를 갖는다.

2021년 2월 8일



함 양 군

군수 서 춘 수



경남개발공사

사장 이 남 두